



한국의 기능성 유제품 표시제도 개선방안

박 기 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Amendment Scheme of Labeling Regulation for Functionality of Dairy Products

Ki-Hwan Park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labeling for functionality of food or food components are recognized globally and are essential for the growth of dairy product industry. To expand the functional claims of dairy product especially fermented milk product, the regulations restricting the labeling of functionality should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The labeling regulations of functionality and efficacy for processed and functional foods in related Acts and subordinated statues such as definition, scope of claims, etc. were reviewed and the problems existed in the system were identified.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efficacy for processed food in Food Sanitation Act were analyzed to revise the labeling regulation of dairy product. A draft of amended labeling regulation for the functionality of dairy product is proposed, which provides consumers with appropriate information of beneficial effects on health purpose for human body structure and function. In order to develop the dairy products and related industries, these conte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annexed Table 14 in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ct is amended.

(Key words : dairy product, functionality, labeling standard)

서 론

소득 향상과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노령 인구의 증가 등 식품 소비 여건의 변화와 식품과학의 발달, 식품 생산 기술의 다양화 등으로 식품산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식생활 변화는 식습관에서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현대인의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소비자들의 식생활 관리를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추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 등장한 well-being 현상에 결합되면서, 식이를 통한 영양소와 기능 성분 섭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건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유통 및 소비를 위해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2004년 1월 31일자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을 제정·공포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업무를 전면 시행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은 부정·불량 건강 관련 식품을 무분별하게 제조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됨으로써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구입·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부 성분의 기능성이 입증된 일반식품에 대한 표시가 금지되어 정부, 업계, 소비자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관련 산업계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시유와 발효유 등 유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형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림수산부 관할의 축산가공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련하는 법률 조항이 없어, 발효유 등 기능성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가 과대·허위 표시 및 광고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유제품의 소비 확대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Corresponding author : Ki-Hwan Park,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hung-Ang University, Anseong, Gyeonggi-do, 456-756, Korea. Tel : 82-31-670-3036, Fax : 82-31-675-4853, E-mail : khpark@cau.ac.kr

있는 현실이다. 일반식품의 형태를 수용하지 않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성과 유용한 기능성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이 제한되어 영업의 자율이 침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법률의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소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제도권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조화를 이루어야 국내 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농업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유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제도는 시급히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기능성은 다 알려져 있으나 제형의 제한과 건강기능식품에서 요구되는 섭취량과 복용 기준 등의 문제로 인해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비용 절감, 산업 발전을 위해 기능성 표시 제도가 개선되는 한편, 관련 법률의 정비 또는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식품의 기능성 표시 확대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와 유제품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발효유 등 기능성 유제품 관련 법규 및 기능성 표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론

1. 국내 관련 법령의 기능성 및 유용성 표시제도

1) 건강기능식품 법령 입법 취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보건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국가적 감독·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대한 업계의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소비를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저감하는 보건정책상의 목표를 지향하였다.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공전 규격화하고 공전에 미수재된 품목의 경우 자가기준·규격제도를 도입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넓혀 나갈 여지를 마련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객관적으로 기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식품과 성분을 점차 건강기능식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소재 기능성 식품의 개발 및 천연 자원물의 개발 촉진에 대한 식품업계의 새로운 기능성 식품 연구 및 개발 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위생법의 규율에 따르는 일반식품과 차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약품에 관한 약사법의 규율과 구별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측면에서 식품·의약품 관련법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충하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여 기존 식품위생법

[별표 14] <개정 2000.12.11, 2004.8.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52조 제2항 관련)

1. 삭제 <2004.8.4> (적용대상 축산물: 식육추출가공품)
2. 표시(가공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제품 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유용성
 - (1)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예시: 건강유지·건강증진·체질 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변비 등 질병 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예시: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 나. 용도
 -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표현(예시: 유아식·환자식 등)
 - (2)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예시: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노화기에 좋다 등)
 - 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규율보다 위반시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의 가공식품에 대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제52조(허위 표시등의 범위와 적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4.8.4>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그 동안 일반식품 중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고유의 기능성이 통념화된 것, 실험적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에 대하여 식품의 효능 표시에 있어 적절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 기능성이나 효능을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식품산업에서도 고기능성 발효유(장기능 개선, 간기능 개선, 위기능 개선 등), 고기능성 우유 등은 제품이 가지는 특정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가 되었다.

또한, 특수영양식품 중 영·유아, 병약자나 임산부, 노약자 및 환자용 식품군은 특수한 계층의 소비자로서 제품의 기능성 표시에 앞서 본 식품이 특정 소비대상에 미치는 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

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군은 국내 영양학 전문가들의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제품의 영양학적 특성, 사용한 원료 유용성 등의 표시가 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의 가공식품에 대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3(개정 전)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의 개정

2007년 1월 1일로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현재 특수용도식품(병원 환자식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용성 표현의 범위를 일반 식품으로 확대하여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건강 유지·건강 증진·체력 유지 등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과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의 기능 및 작용 등) 등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유제품 기능성 표시 현황 및 문제점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유사표시 등의 금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의 범위는 약사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3(개정 전)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제6조 제2항 관련) <개정 2000.8.8, 2004.1.31>

1. 적용대상식품
특수영양식품

2. 표시 및 광고(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가. 유용성

(1) 삭제 <2004.1.31>

(2)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개정 2000.8.8>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 (예시: 유아식, 환자식 등)

(2)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예시: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에 좋다 등)

다. 섭취방법·섭취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라. 기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0.8.8 개정>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6조 제2항 관련)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건강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2. 용도 :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 (2)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제2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농·임·축·수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였으나, 6가지 제형을 제외한 형태로 제조·가공한 일반식품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금지하고 있어 유용성 표시 금지 대상 식품에는 기존의 일부 유용성 식품과 6가지 제형의 유용성 식품과 함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관리를 받고 있는 기능성 유제품이 포함된다.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의 일반식품에도 가능했던 기능성 표시가 제한을 받게 되어 업체에서는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의 관리 하에서 이미 건강증진을 위해 효능이 입증된 제품에 한하여 정부가 허가하고 효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광고와 표시를 하게 되어 있

었으나 이를 제한받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표시 가능 범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식품산업의 육성방안으로 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반식품에의 유사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범위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허용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2) 유제품 및 발효유의 기능성 표시 현황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유제품들의 기능성 표시 범위는 칼슘 강화, 기능성 성분 첨가(오메가 3, DHA 등), 비타민 강화, 칼슘 흡수 촉진, 천연 미네랄 함유, 저 혈당지수(GI) 등이 있다. 국내 발효유의 제품 규격은 발효유(액상발효유), 농후발효유(호상발효유, 드링크 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가 있다.

기능성을 강조하는 발효유 제품은 주로 유산균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 위, 간 및 혈압과 관련된 성분을 강조하고 있다.

장 건강: Probiotic 유산균/Prebiotics, 식이섬유, 칼슘 함유
위 건강: 난황 항체, 천연물 유래 기능성 성분, 질병 예방 효과

간 건강: 간기능 개선 기능성 성분

혈압 저하: 다양한 기능성 소재

기능성 발효유는 주로 Probiotic 유산균을 표시하고 있고, 장과 위 건강 관련 발효유는 장과 위를 직접표시하거나 관

런 문구를 기입하고 있다. 간 건강 및 혈압 관련 발효유는 제품 특성을 유효성분의 특허, 연구결과 등을 설명하거나 인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효능을 나타내는 인체 부위나 질병이 심화될수록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제품들의 기능성 실태를 구분하면 크게 칼슘성분을 높이거나 뼈 성장에 관련된 성분을 포함하여 뼈를 튼튼하게 한다거나 키를 크게 한다는 표시와, 생리활성 성분을 첨가하여 집중력 강화나 두뇌 회전을 빠르게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우유의 특성을 강조한 것 이외의 것들은 건강에 좋다는 원료를 함유하면서 당의 함량이 낮다는 것을 표현하는, 즉 GI가 낮은 값을 가져 건강에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유제품의 기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유제품과 달리 발효유는 신체의 특정 기관에 대한 활동이나 역할에 있어 기능을 나타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장의 활동을 좋게 한다는 것과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을 강조하는 제품들을 볼 수 있다. 일부 제품은 특정 성분의 첨가로 간접적으로 효능을 나타내는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있다.

3.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 개선 방안

1) 일반식품의 표시 개선

식품의 표시는 식품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식품표시 내용 중 식품의 영양소 함량과 건강증진 효과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식품 표시는 영양표시(Nutrition Labeling),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와 국민 보건 증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로 구분된다. 일반식품의 영양표시는 식품의 영양적 특성이나 건강에 유익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필요하다. 영양소 함량 표시는 영양강조표시(영양소의 존재, 부재 또는 함유량 기술)의 수단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이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식품의 건강강조표시는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의 영양상, 건강상의 이로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좋은 영양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또한 제품간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식품회사의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원재료 함량 표시로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도움을 준다.

각국의 식품 표시 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을 6개 제형의 식이보조제로 국한하여 기능성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반식품과 식이보조제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지만 모든 제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또한, Codex, 호주/뉴질랜드, 일본,

유럽연합도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형을 의약품 범위 안에서 별도의 제품군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04년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일반식품의 유효성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국민들은 기능성분,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한 인식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다류(녹차), 과채가공품, 벌꿀 등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건강기능표시 확대가 국제적 추세이고, FTA 등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로 제도에 의한 강제적 제한 규제는 무리이므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 개선 방향

우유 및 유제품은 오래 전부터 인류가 식용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그 생리적 영양성과 기능성 면에서 다른 어느 식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다양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널리 입증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민 보건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제품의 생산은 웰빙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라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유산균 함유식품은 유산균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생균 배양 또는 5가지 제형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능성 발효유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외된 제형인 액상 형태이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Bifidobacteria/lactobacilli* 등 Probiotic 유산균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성 유제품의 기능성 범위는 우유 유래 기능성(골 성장, 골다공증 예방 등), 유산균 유래 기능성(정장작용, 면역조절작용 등), 우유 유래 기능성 소재 첨가(강화제품), 일반 기능성 소재 첨가(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활용)에 의한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제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는 과학적이고 일반적인 기능성 표시(정장작용, 뼈성장 등)와 용법/용량, 함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기능성 표시 및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제도에 따른 기능성 소재 첨가 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를 확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고 있는 법령의 제정비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제형을 개선하여 현재의 식이보조제 개념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functional food 범위로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되는 기능성 범위를 축소하여 질병발생위험감소 강조표시만 관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건강기능식품법과 같은 부적합한 제도로 인해 기능성이 입증된 유제품들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축산물가공기준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능성 표시 일부 범위에 대한 표시 지침을 마련하고 기능성 성분 및 영양소 기능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별표 14를 개정하여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로 가능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강조표시를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 결과 및 자료의 축적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축산물에 한정된 유용성 표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4의 개정은 CODEX의 식품 중 건강 및 영양 강조 표시에서 표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신체의 성장, 발달 및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적 역할을 나타내는 영양소기능표시(예: 칼슘은 강한 뼈와 치아의 발달을 돕는다; 엽산을 함유: 엽산은 태아의 정상발육에 기여한다 등)와 영양기능, 감각기능, 생체조절기능을 복합한 일본의 특정보건용 식품의 표시 형태 일부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개정안

1) 개정 내용

[별표 1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52조 제2항 관련)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①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예시: ○○○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의 상태를 양화하게 유지하고 장내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움을 줍니다(건강유지; 배변활동).

- ②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예시: ○○○는 인체내 면역활성을 증가시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체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체질개선; 아토피 증세 완화).

- ③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는 *H. pylori*의 생육을 저해시켜 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위 기능 개선).

○○○는 일정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 ④ 유당분해우유는 유당불내증으로 인하여 속이 거북하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의 장을 편안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① ○○가공품 ○○는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②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③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 ④ 미네랄류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⑤ 아미노산류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다.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서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입증되거나 공인된 사실에 대하여 원료의 기능성 및 함유량 표시를 나타내는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2) 용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가.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가공품 ○○이라는 표현

나.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2) 별표 14의 신규 대조표(안)(표 1)

결 론

본 연구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확대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와 유제품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발효유 등 기능성 유제품 관련 법규 및 기능성 표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1. 별표 14의 신규 대조표(안)

현 행	개 정
1. 삭제 <2004.8.4>	
2. 표시(가공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삭제>
가. 유용성	1. 유용성
(1) 신체조성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예시: 건강유지·건강증진·체질 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가. 신체조성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예시: ○○○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의 상태를 양화하게 유지하고 장내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움을 줍니다.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예시: ○○○는 인체 내 면역활성을 증가시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체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3)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환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는 <i>H. pylori</i> 의 생육을 저해시켜 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는 일정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 유당분해우유는 유당불내증으로 인하여 속이 거북하거나 실사를 하는 분들의 장을 편안해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등)	(1) ○○○가공품 ○○○는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예시: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신설> (4) 미네랄류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5) 아미노산류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신설> 다.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서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입증되거나 공인된 사실에 대하여 원료의 기능성 및 함유량 표시를 나타내는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나. 용도	2. 용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표현(예시: 유아식·환자식 등)	(1)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가공품 ○○○이라는 표현
(2)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예시: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노화에 좋다 등)	(2)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표 1. 계속

현행	개정
<p>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p>	<p>3.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p>

이를 위해 국내 관련 법령의 기능성 및 유용성 표시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기능성 표시에 대한 법령간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조사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식품위생법」의 일반식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 제도 및 운영현황 및 유제품에 대한 적용 타당성을 조사하여 식품의 표시와 유제품 기능성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비용 절감, 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즉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4의 개정 시 이들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 1-1985 (rev. 1-1991).
2. European Union. Regulation (EC) No 1924/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December 2006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2006).
3. Food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2005. Nutrition, Health and Related Claims. A guide to the development of a food standard for Australia and New Zealand.
4. WHO. 2004. Nutrition Labels and Health Claims: The Global Regulatory Environment.
5. 김대병. 2004.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관리제도. 식품과학과 산업, 37(1):50-54.
6. 농림부. 2006축산물가공처리법.
7. 박기환. 2005.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05년도 춘계 심포지엄.
8. 박기환. 2004.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일관성 및 용이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
9. 보건복지부. 200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0. 보건복지부. 2007. 식품위생법.
11.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12.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13.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식품등의 표시기준.
14. 심창구. 2004. 건강기능식품법시행의 의의와 경과 및 정책방향. 식품과학과 산업 37(1):37-40.
15. 윤광로, 박기환, 하상도, 류경. 2004. 건강기능식품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
16. 임기섭, 김종수. 2004. 건강기능식품의 국가관리체계. 식품과학과 산업 37(1):41-49.
17.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03. 건강기능식품법의 해설.
18. 허석현, 김영전. 2004.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 심의 제도. 식품과학과 산업 37(1):55-60.
19. 황순옥, 이중근, 조양희, 장경원. 2003. 식품 등 표시기준 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고서.